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## 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10. 12.  
제공자 :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 
과 장 : 한 중 현  
사무관 : 장 순 석  
전 화 : 031-467-1866  
쪽 수 : 2P  
별첨자료 : 있음(1P)

이 자료는 2010년 10월 1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검역원, 시범평가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안 검증

-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'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동물복지형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.
  - 이에 따라 검역원은 동물복지, 양계 및 인증 평가 전문가 등으로 시범평가팀을 구성하고,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평사 또는 방사 산란계농장 4개소를 시범평가 대상 농장으로 선정하였다.
-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'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써,
  - 동물의 건강관리, 위생, 쾌적한 환경, 적절한 시설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과 더불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.
-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, 검역원은 지난 2월부터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'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'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.

- 인증기준안에는 사육밀도 기준, 산란상, 헛대 및 깔짚 제공, 닭의 건강 상태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터리 케이지 사육이나 강제환우는 금지된다.
- 검역원 관계자는 "이번 시범평가는 인증기준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것"이라며, "기준안 중 국내 현실 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여 실효성있는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'를 마련하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**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 기준(안) 주요 내용**

조항	항목	주요 내용
제1조	목적	산란계의 적절한 사육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규정
제2조	용어 정의	“관리자”, “자유방목” 등에 대한 용어 정의
제3조	관리자의 의무	매년 4시간 이상 교육 의무화, 3년 이상 기록 보유,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계획 수립 등
제4조	닭의 건강 상태 점검 등	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 후 기록 의무화 등
제5조	사육 관련 시설	산란계 5마리 당 1개 이상의 산란상, 1마리당 최소 15cm 이상의 햇대, 바닥의 1/3 이상의 깔짚 제공 등
제6조	자동화·기계화 설비	매일 1회 이상 기계 결함 여부 점검, 경보 장치 설치 등
제7조	사육 환경	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(明期) 및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(暗期) 준수, 최소 10lux 이상의 조명도 유지,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, 적절한 환기 및 보온 등
제8조	사육 밀도	m <sup>2</sup> 당 9마리 이하(m <sup>2</sup> 당 7마리 이하 권장) 등
제9조	급이	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·호르몬제 등 첨가 금지, 선형 급이기는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, 원형 급이기는 최소 4cm 이상 급이 공간 제공 등
제10조	급수	음수 수질기준은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, 벨형 급수기는 100마리당 1개 이상, 니플형과 컵형은 10마리당 1개 이상 설치 등
제11조	건강 관리	질병, 상처발생 시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 등(격리치료 등)
제12조	인도적 도태	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도태 방법(휴대용 전기 충격기 사용 후 즉시 방혈, 목의 탈구)명시 등
제13조	청소 및 소독	매일 1회 이상 계사 주변 소독,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설치 등
제14조	준수사항	강제환우 및 신체 절단 금지, 부리다듬기 제한적 허용 등
제15조	동물복지형 자유방목	방목장 면적은 1마리당 1.1m <sup>2</sup> 이상, 1,000마리 당 8m <sup>2</sup> 이상의 차양시설과 쉼터 제공 등